

#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5
----------	-----

제출년월일 : 2014.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가. 당초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납부(7월)함  
2011년 지방세법 개정 후, 5만원 초과 납세자가 증가하자 2회납부  
(7월, 9월) 대상자도 증가하여 납세자들의 불편함을 야기함.

이에 지방세법 개정(2013.1.1)과 관련,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  
하여 납세자들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을  
기하고자 함.

나. 이와 함께 조문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  
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평창군수(이  
하 “군수”라 한다)”로 변경한다.

나. 제8조제1항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내에 관할”을 “이내에”로 변  
경한다.

다. 제11조제1항 중 “관할 군수”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이내에 관할”을 “이내에”로 변경한다.

라. 제16조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변경하여 납세의무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한다.

마.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이내에 관할”을 각각 “이내에”로 변경한다.

바.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내에 관할”을 “이내에”로 변경한다.

사.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내에 관할”을 “이내에”로 변경한다.

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기준일까지 관할”을 “과세기준일까지”로 변경한다.

자. 제25조제1항 중 “정확한 지 여부를”을 “정확한 지”로 변경한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첨1】**

(2)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13-1132호

- 공고기간 : 2013. 12. 13 ~ 2014. 1. 2(20일)

- 결과 : 의견제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감사실-11690, 2013.12.10)

\*원안 외 조문 중 애매한 문구 정비 권고

(4) 규제심사 : 원안동의(기획감사실-11868, 2013.12.16)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주민생활지원과-68878, 2013.12.16)

(6)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2】**

【별첨1】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내에 관할”을 “이내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할 군수”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이내에 관할”을 “이내에”로 한다.

제16조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이내에 관할”을 각각 “이내에”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내에 관할”을 “이내에”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내에 관할”을 “이내에”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기준일까지 관할”을 “과세기준일까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정확한 지 여부를”을 “정확한 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u>지방세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u>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u>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 부터 30일 <u>이내에 관할 군수</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강</p>	<p>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u>지방세법</u>」----- ----- ----- ----- ----- ----- ----- <u>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8조(신고의무) ① ----- ----- ----- <u>군수</u>----- ----- ----- ----- ----- ----- -----.</p> <p>② ----- ----- ----- <u>이내에</u> ----- -----.</p>

원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 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신고의무) ① -----  
-----  
-----  
----- 군수 -----  
-----.

② ----- 각호 -----  
-----  
----- 이내 -----  
-----.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납기) -----  
-----  
----- 10만원 -----  
-----  
-----  
-----  
-----.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  
-----  
-----  
-----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

-----  
-----  
----- 이내에 -----  
-----.  
-----

1. ~ 7. (현행과 같음)

② -----  
-----  
-----  
-----  
----- 이내에 -----  
-----.  
-----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  
-----  
-----  
-----  
-----  
-----  
-----  
-----  
----- 이내에 -----

출하여야 한다.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  
-----  
-----  
-----  
-----  
-----  
-----  
-----  
----- 이내에 -----  
-----.  
-----  
-----  
-----.

1. ~ 5. (현행과 같음)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  
-----  
-----  
-----  
----- 과세기준일까지 -----  
-----.  
-----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 7. (생략)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  
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②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  
-----  
-----  
-----  
정확한 지 -----.

② (현행과 같음)

【별첨2】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재무과장 최원규
연락처	(033) 330-2270

【별첨3】

# 관 계 법 령

## 지 방 세 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